

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10월 16일  
발의자: 김영옥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김영철, 남창진,  
박성연, 서상열, 신동원,  
유만희, 이성배, 이종배,  
최유희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의함 (안 제2조제2호).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다자녀가족”이란”을 ““다자녀 가족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가족을”을 “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다자녀가족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”을 “다자녀 가족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제1호 중 “다자녀가정”을 “다자녀 가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 2. "다자녀가족"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을</u> 말한다.	1. (현행과 같음) 2. " <u>다자녀 가족</u> "이란 ----- --- <u>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이</u> <u>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</u> <u>다)을</u> 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다둥이 행복카드"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다자녀가족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</u> 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	4. ----- ----- <u>다자녀 가족</u> --- -----.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3조(포상)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.	제13조(포상) ----- ----- -----.
1. <u>다자녀가정</u> 중 모범가정 2. ~ 4. (생 략)	1. <u>다자녀 가족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32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영옥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회신일 : 2023.10.18.

##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
2. 작성자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당관             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  
주무관              손제승  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